

## 가맹본부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교육 실시



**한국** 공정거래협회(회장 김 용)는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화) 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마포구 공덕동 소재)에서 가맹본부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본부 임직원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으로 실시한 가맹본부 임직원 공정거래교육

에서 유통거래와 박흥진 사무관은 2002년말 기준으로 국내 가맹사업의 시장규모가 약45조원, 가맹본부 1천 600여개, 가맹점 12만여개로 국민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가맹사업거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 법의 제정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과 공정화 등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해설,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으로 정보공개서의 사전공개와 갱신 및 수정, 가맹금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 등 가맹사업본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에 대한 상세한 강의가 있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분쟁해결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해설과 함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제도의 운용방향으로서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박흥진 사무관은 “가맹사업법의 기본 목적이 가맹사업거래의 촉진을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인식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장애요인의 제거를 위해서 엄격히 법집행을 하고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최소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 질서의 한 축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특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질의 및 응답

**질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응답** 오는 11월에 외식업, 소매업 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 및 업체부터 표준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질의** 정보공개서를 수정 및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 및 갱신 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응답** 정보공개서의 제공이 수정 및 갱신의 목적인 바, 정보공개서를 수정 및 갱신했다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의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질의** 가맹본부와 가맹본부의 지사, 가맹점이 있을 경우에 가맹점 계약을 가맹본부 또는 지사와 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맹본부 지사와 체결할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한계는 어떠한지

**응답** 가맹본부의 지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본부와 지사와의 관계를 세밀히 검토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책임과 한계는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지사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질의** 가맹본부가 전국단위 판촉을 할 경우, 가맹점에 일정 비용의 판촉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응답**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계약조건이 분명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판촉비용 등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질의** 가맹사업법 제9조제2항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 등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맹점의 경우 영세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응답** 가맹점은 영세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 제정의 미비점으로 사료된다. 공정위는 상기 법 조항에 대하여 법 개정시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 하도급 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 실시



**한국** 공정거래협회(회장 김 용, [www.kfta.org](http://www.kfta.org))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하도급 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이 지난 7월 16일(수) 제조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주제로 한 이번 교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박재규 서기관은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벌점 감점, 과징금 감면, 현장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시행중에 있고 금년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의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하도급 공정화교육은 하도급법 운용과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과 발주자의 의무사항 등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하도급 사건처리절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협회 준법지원실 홍미경 실장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의 주요내용과 운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기업이 CP를 도입함으로써 법 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CP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7대 핵심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또는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